

건설하도급 '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' 사용시 유의사항

□ 배 경

- 최근 중앙회 점검 결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*(이하 대금지급시스템)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'시스템 사용 자체를 하도급대금 직불'로 오인하는 등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사례가 지속 발생

* 하도급지킴이(조달청), 대금e바로(서울시), 체불e제로(철도시설공단) 등

- 특히,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이 공공공사에 의무화되는 등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하도급 대금 보호와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회원사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 대처가 필요

□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현장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유의사항

-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, 지급보증의 면제는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

<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(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) >

- 건설하도급 계약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
- 하도급대금 직불 3자합의(발주자·원도급자·하도급자)하는 경우
- 원도급자가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(회사채 A0, 기업어음 A2+이상)인 경우
- 상생결제시스템(중기부)을 사용하면서 원도급자의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

-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현장이라 하더라도,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불합의(발주자·원도급자·하도급자)가 없으면,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을 반드시 해야 함 (중기부 상생결제시스템은 제외)

○ 발주자 직불 3자 합의를 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기성청구·수령 시 실제 직불*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, 실제 직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도급자 및 발주자에게 개선을 요구

* 실제 직불이란, 하도급대금 일체가 원도급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(이체)되는 것을 의미

- 하도급지킴이, 대금e바로 등 **현행 대금지급시스템**은 실제 직불 여부를 하도급자가 월별 기성대금 청구 시 설정(또는 변경)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자의 주의를 요함

- 또한, 실제 직불 미이행시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직불의무 위반, 원도급자는 미보증 사유가 소멸되었기에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면 대금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해당(기한 내 지급보증 미이행 시, 하도급자는 계약이행보증을 아니할 권리를 가짐)

○ 기타 대금지급시스템 및 하도급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협회 문의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